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08. 3. 14. 2008도418]

【판시사항】

-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2]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일시와 장소 및 그 투약의 양과 방법 등의 심판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65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 3777 판결(공2006하, 1389)

【전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배영철

【원심판결】인천지법 2007. 12. 27. 선고 2007노2591 판결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한다.
- "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 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 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 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538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7. 4.경부터 같은 해 6.말경 사이에 인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사천시 또는 중국 산동성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주사 또는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 및 투약의 양과 방법을 위와 같은 정도로만 기재한 것만으로 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